#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연월일 : 2013. 12. 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 2.(월)

다. 위원회회부 : 2013. 12. 6.(금) 라. 위원회심사 : 2013. 12. 13.(금)

2. 개정이유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 수정(안 제8조)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수정
  나.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및 개설계획 예고
- -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
  -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(안 제13조)
   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개설자, 개설지역, 영업개시예정일 등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 신청(안 제13
- 다.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강화(안 제13조의3)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,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
  -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,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함 (단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 할 수 있음)

4. 근거법령 가.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7조의5, 제8조, 제12조의2, 제13조의4 및 제52조 나.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제4조의2, 제4조의3 및 제5조의2

### 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

는 도메닌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,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,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나 등록변경절차, 영업시간 제한 등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

○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